

##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

관내 주택가, 도로,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,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하며,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견인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(점유자)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.

1. 공고명칭 :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
2. 공고기간 : 2024. 10. 29. ~ 2024. 11. 28.(30일 간)
3. 강제견인일시 : 2024. 11. 29. 이후
4. 공고대상 : 59도9689
5. 공시송달내용

가. 차량 소유주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(폐차 및 회수)하여 주시기 바라며, 차량을 무단방치한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범칙금 20~30만원이 부과되며,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(강제처리)의 규정에 의거 폐차 후 범칙금 100~150만원이 부과되며,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(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나.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(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)은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.

6. 문의처: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무단방치 담당자(043-740-3512)

2024년 10월 29일

영 동 군 